

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및 향후 추진방향



안 규 정

농림축산식품부
축산정책과 서기관

축산업의 규모화·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주로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한 축사 간 지붕 연결 등으로 건폐율(최대 60%) 초과,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가 존재하여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*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.

*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결과(16.5~9월) : 115,212호 중 무허가 축사 60,190호(52.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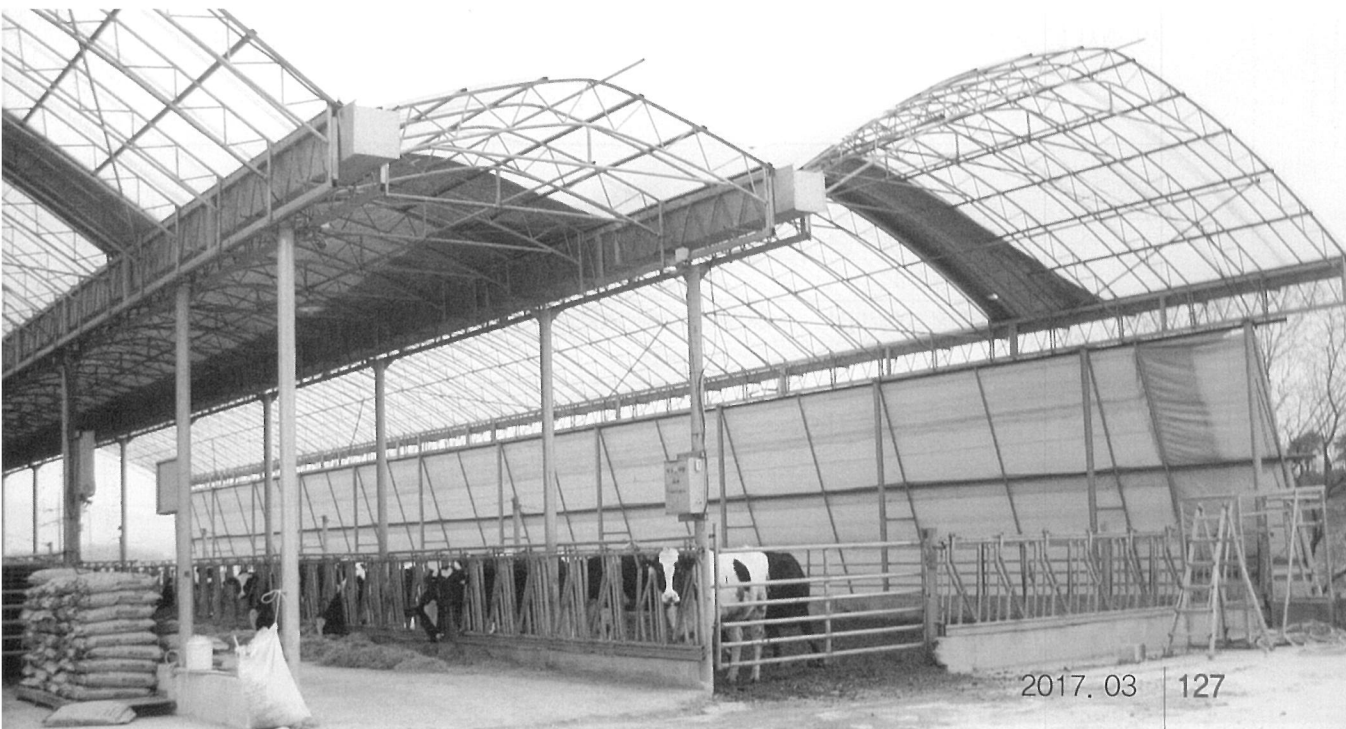
그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내용은 ① 신·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·허가가 불가하므로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을 한시적으로 3년간('15.3.25~'18.3.24)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가능하도록 하고 ②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 거리제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어, 환경부·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('14.6~'15.1월) 결과에 따라 축종별·규모별로 축사 거리제한을 재설정하여 환경부 장관이 '15.3.31일자로 권고하였다.

* 한·육우 100m→50m(400마리 미만), 70m(400마리 이상), 돼지 500m→400m(1,000마리 미만), 700m(1,000~3,000마리), 1,000m(3,000마리 이상)

③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%까지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, 일부 지방자치단체 미 제정 또는 하향 설정(20~50%)한 건폐율을 대부분 지자체에서 60%까지 상향하였고, ④ 건축법에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하고 있어 농가가 주로 사용하는 합성수지(일명 썬라이트),

합성강판 1/2 이하 사용가능하도록 하고, 가축 분뇨시설 및 가축양육실·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,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('15.4.27일 이전)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시설(소독시설)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시켰다 ⑥ 축사 차양 3m까지,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 지붕연결 부위,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였다. ⑦ 임야(산지)에 설치된 퇴비사,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 신고(허가)·변경신청 시 '산지전용협의(변경협의) 요청서' 및 '복구의무면제' 신청을 통하여 적법화를 추진하고 ⑧ 육계·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축사 바닥면부터 30cm² 이상 비닐 등 방수재를 깔고, 10cm² 이상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깔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. ⑨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을 허용하던 것을 한·육우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축종으로 확대하고 ⑩ 불법 축사에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에 처벌할 수 있는 벌칙적용을 3~4년간 유예 조치하였다. ⑪ 건폐율 초과, 용적률 초과, 무허가, 미신고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정금액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, '18.3.24일까지 추가 50% 감경하는 일몰제도 추진하였다.

* 건축법 시행령 개정 : 위반면적×시가표준액 100분의 50 × 위반내용(100분의 70, 80, 90, 100) × 50%('18.3.24일까지)





축산업 허가·등록을 받은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경우
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취소하고, 신규 축산업 허가·등록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
의무를 부여하는 축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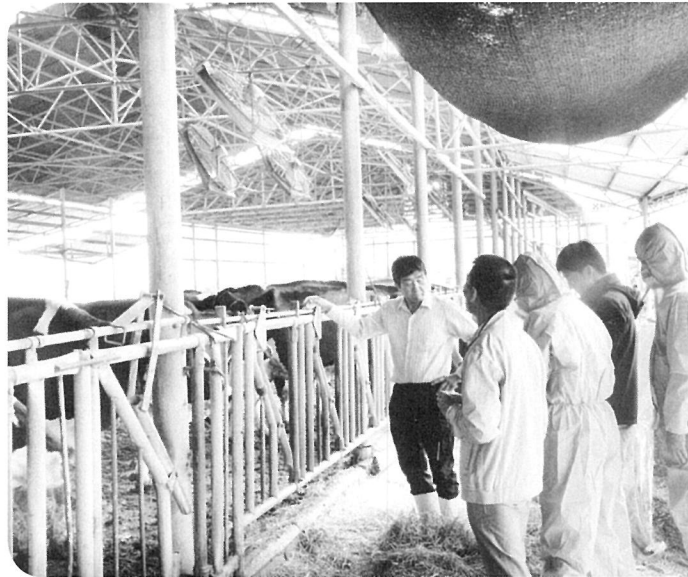


그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① 농가 교육 및 홍보를 지방자치 단체, 축산단체, 농가대상 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 교육 순회설명회('15.11.30~12.10), 환경부 주관으로 시·군·구 환경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실시(2.18~26),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, 무허가축사 및 축산환경 개선교육(2.29~계속), 오리협회(2.24), 낙농육우협회(5.17~18), 육계협회(5.24~25) 농가교육 실시 ② 농가 상담 활성화를 위해 161개소 상담소 설치·운영(농협중앙회1, 지역본부9, 지역축협138, 업종조합 13), 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(위원장(농협 자원국장) 등 10명) ③ 무허가축사 적법화 리플릿(4만부) 배포('15.12.), 무허가축사 적법화 카운트다운제(D-day) 실시(1.27), 「알고 싶어요 축산업허가제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」 소책자 제작(15만부) 배포(6.4), 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축사 상담사례집 5,000부를 배포하였다. 또한, 축산업 허가·등록 126천호에 대해 축산업 허가기준 충족여부 등 무허가·빈 축사 등 축산 시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'16.5.16부터 9.30까지 하였으며, 그

구분	1단계 ('18.3.24일까지)	2단계 ('19.3.24일까지)	3단계 ('24.3.24일까지)	합계
돼지	축사면적 600㎡이상	축사면적 400㎡~600㎡	축사면적 400㎡미만	
	2,248	326	584	3,158
소	축사면적 500㎡이상	축사면적 400㎡~500㎡	축사면적 400㎡미만	
	15,789	3,544	33,136	52,469
닭·오리	축사면적 1,000㎡이상	축사면적 600㎡~1,000㎡	축사면적 600㎡미만	
	2,347	442	1,774	4,563
합계	20,384	4,312	35,494	60,190

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, 무허가 적법화 대상 60,190호 중 축종별로 보면 한우·젓소 52,469호(87.2%), 돼지 3,158호(5.2%), 닭·오리 4,563호(7.6%) 분석되었으며, 무허가 적법화 대상 60,190호 중 단계별로 보면 1단계 20,384호(33.9%), 2단계 4,312호(7.1%), 3단계 35,494호(59.0호)로 나타났다.

앞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영상회의 개최 및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상황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.



구체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중앙부처 T/F 및 시·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실적 등을 점검(무허가 적법화 자체계획 수립여부, 추진반 구성(건축, 환경, 축산) 및 운영실적, 농가 교육 및 홍보, 적법화(대상농가, 상담, 진행 중, 완료) 실적 등)하고,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즉각 해소하고, 무허가축사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실적 상시 관리, 방역본부 예찰 및 축산환경관리원 컨설팅 시 무허가축사 점검 병행, 중앙단위 무허가축사 적법화 점검반을 농식품부, 농협, 축산환경관리원, 건축사협회, 축단협, 지자체 등 9명 내외로 구성하여 '17.2월부터 '18.3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. 특히 실적이 저조한 시·군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3일 이상 지도 점검 및 농가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.

또한, 축산업 허가·등록을 받은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경우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취소하고, 신규 축산업 허가·등록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의무를 부여하는 축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

마지막으로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체 원인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특히 낙농가의 착유세척수 처리방법 및 입지제한구역 내 입지한 무허가축사에 대한 방안도 축산단체 및 관련부서와 해결책 마련에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. ㉞